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2월 21일

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“주민생활지원과”신설에 따른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“복지환경국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”으로 명칭변경(안 제3조)
- “주민생활지원과”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('06.4.5)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계획 지침
-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-439('06.9.19)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능 강화계획 지침에 의거 과 신설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임
- 주요 개정내용은
 -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
 - 사회복지과 업무일부를 조정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개정안임
 - 부칙에 시행일은 2007. 1. 1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에 명시된 국 명칭을 일괄 개정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